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43
----------	-----

2025. 6. 11.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30. 강남구청장(위생과)

나. 상정의결

-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1.)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보건소장 이종철)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어린이·사회복지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변경
- 나. 취약계층 급식소 지원을 위한 목적 개정(안 제1조)
- 다.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라. 그 외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5. 4. 11. ~ 2025. 5.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주현)

가. 개정 취지 및 배경

○ 2021년 상위법률 제·개정

- 2021년 7월 상위법률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음.
- 소관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70% 이상이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서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을 제정함.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

-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따르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하는 사회복지급식소 관리·지원 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함.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주요 업무]

-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그 밖의 업무

나. 검토 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이 기존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과 사회복지시설법을 모두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이 2가지 법률을 모두 포괄하는 제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 목적 규정 개정

- 안 제1조(목적)의 경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이 조례 목적으로 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 어린이식생활법과 사회복지시설법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게 되므로, 조례의 목적에 이 내용을 명시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 정의 규정 신설

- 안 제2조(정의)의 경우 상위법률에서 정하는 개념에 부합하도록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를 묶어서 지칭할 수 있도록 ‘급식소’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 그 밖의 조문 정비

-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조문 내용에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 다만,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수탁계약’ 개념을 ‘위탁계약’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추어 용어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 규정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생략) 2. 수탁기관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u>위탁 계약내용</u> 을 위반하였을 때 3. (생략) 4. (생략)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u>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u>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생략) 2. ----- ----- <u>위·수탁계약</u> ----- -----. 3. (생략) 4. (생략) ② ----- <u>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된</u> ----- ----- -----.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생략) 2. ----- ----- <u>위탁계약</u> ----- -----. 3. (생략) 4. (생략) ② ----- <u>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된</u> ----- ----- -----.

다. 종합 의견

○ 상위법률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사회복지시설법 개정을 통하여 명시되었으므로, 구청장이 이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어린이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상위법률의 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률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임.

○ 향후 계획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단체급식 사회복지급식소를 관리·지원하는 업무의 구체적 수행 방안에 대해서는 부서 설명이 있으면 바람직할 것임.

※ 관계 법령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2호]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탁계약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3. 4.] [대통령령 제35366호]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1.)

- 질 의 : 현재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향후 사회복지시설 급식 관리까지 하도록 하여 운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인력이나 행정, 예산 등이 확보 되었는가. 센터에서 경로당 급식 관리는 가능한가
- 답 변 : 국민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우선 내년도에는 사회복지 시설 중 29개소 정로를 시범적으로 관리 확대를 할 계획임. 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급식소 수에 따라 편성이 되는데, 현재 180개소에서 시범운영 계획인 29개소가 증가되더라도 220개소가 넘지 않아 예산과 인력에 변동이 없을 예정임. 관내 174개소 경로당 중 요리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133개소 정도임. 향후 133개소 경로당 식당까지 관리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4~5억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7. 토론 요지

-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하여 용어를 수정하는 수정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의안번호

제543호

발의일자 : 2025. 6. 11.

제안자 : 경제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하도록 용어를 수정함

2. 수정내용

-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추어 용어를 수정함
(안 제8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위·수탁계약”을 각각 “위탁계
약”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서울특별시 강남구</u> <u>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u> <u>운영 조례</u></p>	<p><u>서울특별시 강남구</u> <u>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u> <u>설치 및 운영 조례</u></p>	<p>(개정안과 같음)</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u>」 제21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u>어린이급식소</u>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u>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u>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u>」 제21조, 「<u>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u>」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 <u>급식소</u>----- <u>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u>-----.</p>	<p>(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어린이”란 「<u>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u>아동복지법</u>」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 “<u>어린이식생활법</u>”----- -----.</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신 설>

2. “어린이 급식소”란 어린이에게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 4. (생략)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
—.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센터의 기능)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u>어린이 급식소</u> 위생관리 및 영양 관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1. <u>급식소</u> ----- ----- -----	(개정안과 같음)
2. <u>어린이 급식소</u> 위생관리 및 영양 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u>급식소</u> ----- ----- ---	(개정안과 같음)
3. <u>어린이 급식용</u> 식단 개발 및 영양 지도(채식 및 알러지 대상 어린이 포함)	3. <u>급식용</u> ----- ----- -----	(개정안과 같음)
4. <u>어린이 급식소</u>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4. <u>급식소</u> ----- -----	(개정안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6. 그 밖에 <u>어린이 급식소</u>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u>급식소</u> ----- ----- -----	(개정안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 ----- -----	(개정안과 같음)

1. ~ 6. (생략)

<신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

2. (생략)

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

1. ~ 6. (현행과 같음)

7.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사무의 위탁) ① -----
-----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
----- 이행-----
-----.

1. 수탁사무 ----- 관련 법령 및 조례의 -----

2. (현행과 같음)

3. -----
수탁사무-----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p>4. (생략)</p> <p>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p> <p>1. <u>수탁기관이 제7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u></p> <p>2. 수탁기관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u>위탁 계약내용</u>을 위반하였을 때</p> <p>3. 수탁기관에 <u>위탁사무</u>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p> <p>4. (생략)</p> <p>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u>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u>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탁의 해지) ① ----- <u>각 호</u>----- ----- -----.</p> <p>1. <u>수탁기관이 제7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u></p> <p>2. ----- --- <u>위·수탁계약</u>----- ---</p> <p>3. ----- <u>수탁사무</u>----- -----</p> <p>4. (현행과 같음)</p> <p>② ----- <u>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된</u> ----- ----- -----.</p>	<p>(개정안과 같음)</p> <p>제8조(위탁의 해지) ① (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2. ----- --- <u>위탁계약</u>-----</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② ----- <u>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된</u> ----- ----- -----.</p>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로, “어린이급식소”를 “급식소”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을 ““어린이식생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어린이 급식소”란 어린이”를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으로 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다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어린이 급식소의 효율적”을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로, “법 제21조제1항”을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어린이 급식소”를 각각 “급식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어린이 급식용”을 “급식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 중 “어린이 급식소”를 각각 “급식소”로 한다.

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를 “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탁사무”를 “수탁사무”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을 “관련 법령 및 조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탁사무”를 “수탁사무”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탁 계약내용”을 “위탁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탁사무”를 “수탁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을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된”으로 한다.

1. 수탁기관이 제7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남구</u> <u>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u> <u>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어린이</u> <u>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u>」 제21 <u>조에 따라</u>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u>어린이급식소에</u>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u>어린이급식</u> <u>관리지원센터</u>를 설치 및 운영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어린이”란 「<u>어린이 식생활</u> <u>안전관리 특별법</u>」(이하 “<u>법</u>”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 른 학교의 학생 또는 「<u>아동</u> <u>복지법</u>」에 따른 아동을 말한 다.</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남구</u> <u>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u> <u>터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어린이</u> <u>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u>」 제21 <u>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u> <u>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u> <u>법률</u>」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u>취약계층에게</u> --- <u>급식소</u>----- ----- <u>어린이·사</u> <u>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u>----- -----.</p> <p>제2조(정의) ----- -----.</p> <p>1. ----- ----- “<u>어린</u> <u>이식생활법</u>”----- ----- ----- ----- -----.</p> <p>2. “<u>취약계층</u>”이란 「<u>노인·장</u> <u>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u></p>

2. “어린이 급식소”란 어린이에게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 4. (생략)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센터의 기능) -----

1. 급식소 -----

2. 급식소 -----

개발 및 보급	-----
3. <u>어린이 급식용</u>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채식 및 알러지 대상 어린이 포함)	3. <u>급식용</u> ----- ----- -----
4. <u>어린이 급식소</u>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4. <u>급식소</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u>어린이 급식소</u> 위생 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u>급식소</u> ----- ----- -----
제5조(지원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u>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u>
	<u>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u>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u>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u>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 ----- <u>어린이</u> <u>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

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
2. (생략)
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
4. (생략)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7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생략)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행-----.

1. 수탁사무 ----- 관련 법령 및 조례의 -----
2. (현행과 같음)
3. -----
-- 수탁사무-----
4.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의 해지) ① -----
--- 각 호-----

-----.

1. 수탁기관이 제7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
----- 위탁계약-----

3. ----- 수탁사무-----

4. (현행과 같음)

② -----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된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3
----------	-----

제출연월일: 2025. 5. 30.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위생과

1. 제안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노인·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급식소를 포함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조문 정비 및 개정.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나. 취약계층 급식소 지원을 위한 목적 개정(안 제1조)
- 다.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라. 그 외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5. 4. 11. ~ 2025. 5.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로, “어린이급식소”를 “급식소”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을 ““어린이식생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어린이 급식소”란 어린이”를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으로 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다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어린이 급식소의 효율적”을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로, “법 제21조제1항”을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어린이 급식소”를 각각 “급식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어린이 급식용”을 “급식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 중 “어린이 급식소”를 각각 “급식소”로 한다.

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를 “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탁사무”를 “수탁사무”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을 “관련 법령 및 조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탁사무”를 “수탁사무”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탁 계약”을 “위·수탁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탁사무”를 “수탁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을 “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된”으로 한다.

1. 수탁기관이 제7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남구</u>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u>」 제21 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u>어린이급식소</u>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u>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u>를 설치 및 운영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어린이”란 「<u>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u>」(이하 “<u>법</u>”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 른 학교의 학생 또는 「<u>아동 복지법</u>」에 따른 아동을 말한 다.</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남구</u>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 터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 「<u>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u>」 제21 조, 「<u>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u>」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u>취약계층</u>에게 --- <u>급식소</u>----- ----- <u>어린이·사 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u>----- -----.</p> <p>제2조(정의) ----- -----.</p> <p>1. ----- ----- “<u>어린 이식생활법</u>”----- ----- ----- -----.</p> <p>2. “<u>취약계층</u>”이란 「<u>노인·장 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u></p>

2. “어린이 급식소”란 어린이에게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 4. (생략)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센터의 기능) -----

1. 급식소 -----

2. 급식소 -----

개발 및 보급	-----
3. <u>어린이 급식용</u>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채식 및 알러지 대상 어린이 포함)	3. <u>급식용</u> ----- ----- -----
4. <u>어린이 급식소</u>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4. <u>급식소</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u>어린이 급식소</u>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u>급식소</u> ----- ----- -----
제5조(지원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u>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u>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u>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u>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 ----- <u>어린이 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

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
2. (생략)
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
4. (생략)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7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생략)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행-----.

1. 수탁사무 ----- 관련 법령 및 조례의 -----
2. (현행과 같음)
3. -----
-- 수탁사무-----
4.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의 해지) ① -----
--- 각 호-----

-----.

1. 수탁기관이 제7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
----- 위·수탁계약-----

3. ----- 수탁사무-----

4. (현행과 같음)

② ----- 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 만료로 종료된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위생과 지방행정서기보 권혜윤(02-3423-7075)